재소감염인이라도 기본권 보장해야

클 김 민 중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례 6 | 구치소의 인권침해 사례

처음에 수감된 OO구치소에서 A는 단지 에이즈 감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벌병속청 먹방에 있어야 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지만 단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45일간이나 있어야 했다. A는 아직도 그 0.75평을 평생 잊지 못한다. 운동은 물론 세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재판받을때를 빼고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교도관, 재소지들모두 A의 감염시설을 알고 A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고 욕을 했다. 교도관들은 재소지들이 말썽을 피우면 에이즈 환자가 있는 방에다 넣겠다고 재소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A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사내자식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죽어야지 왜 사냐는 말과, 저래서 부모 없는 자식은 안된다는 말이었다

[사례출처: 2002 사회비평 가을호(양지용, AIDS 감염인의 인권 中)]

재소자의 기본권제한, 법률이 인정한 경우만 가능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은 사회와는 단절된 폐쇄공간으로서 그 안에 수용된 재소자의 생활은 24시간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일반사회에서보다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재소자에게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그 원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과도한 정벌이나 비합리적인 물리력의 행사, 차별대우, 적절한 처우의 부재와 같은 사유로 인권침해가 야기된다.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 번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교도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인권의식의 미비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구금시설의 특수성에 비추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의 인권이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단지 법률로 유보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감염인의 인권, 에이즈예방법에 명문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볼 때 재소지도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라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방법은 명문으로 에이즈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후천성면역 결핍증예방법 제3조 제3행, 그러므로 에이즈에 감염된 재소 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근본적으로 무단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



A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는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에이즈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A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치소에서 당한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을 기본권을 향유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용자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감염인에 대해 보안 유지해야

구금시설에서의 감염재소자에 관한 규율로서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이라고 하는 법무부예규가 있다. 수용자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마약시범, 유흥업소종사자, 동성연애자, 외항선원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우려가 높은 자에 대하여는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신입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시좌명, 입소시 직업,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염우려자를 파악하고 지체없이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염인으로 판명되거나 감염의 의심이 있는 수용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감염인 또는 환자 발견시는 인적사항, 발병경위,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대외비」로 분류하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7조)

A 씨에 대한 조치는 행복추구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사건을 보면 A는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유보되지 아니한 어떤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물론 에이즈의 감염위험을 생각하면 격리수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단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0.75 평의 장벌방(속칭 먹방)에 45일간이나 구금하고, 운동은 물론 세수도 못하게한 조치는 위법한 차별대우이고, 인권침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A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는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에이즈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A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치소에서당한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교도관, 재소자가 모두 A의 감염사실을 알고 A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고 욕을 한 경우라고 하면 A의 사생활상의 비밀이 침해된 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로서 비밀누설금자의무를 부담하는 교도관이 A의 비밀을 누설하여 다른 교도관이나 재소자가 모두 A의 감염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교도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6조). 또한 A는 사생활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국가나해당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할 수 있다.